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공통 적용】

2022년 4월 20일 특허청

<유의사항>

본 가이드라인은 권리회복에 관한 기본적인 심사 원칙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권리회복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기간 해태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목 차

1. 관련 규정	1
1.1 특허법	1
1.2 실용신안법	2
1.3 상표법	2
1.3 디자인보호법	3
2. 권리회복의 취지	4
3. 관련 용어	5
3.1 「출원인 등」	5
3.2 「정당한 사유」	5
4. 권리회복 신청	6
5. 권리회복 심사	7
5.1 권리회복 심사 주체	7
5.2 권리회복 심사 객체	7
6. 권리회복 기간 심사	8
7. 권리회복 요건 심사	9
7.1 권리회복 요건 심사 일반원칙	9
7.2 권리회복 요건 심사 과정	10
7.2.1 방식 심사	
7.2.2 사건의 예측 가능성	11
7.2.3 사건의 유형 구분	12
	13
	13
	15
7.2.7 기타 심사 고려사항	15
8. 권리회복 심사 사례	
8.1 천재지변 등	
	18
8.1 기타 사건	20

1. 관련 규정

1.1 특허법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 사유가</u>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그 사유가</u>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⑦ 생략

1.2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용신안법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의2,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상표법

상표법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u>지정</u> <u>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u>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 사유가</u>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그 사유가</u>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4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u>지정</u> <u>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u> 인정하면 <u>그 사유가</u> 소멸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그 사유가</u>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⑥ 생략

2. 권리회복의 취지

권리회복이란 특허청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넘겨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권리가 소멸한 경우 그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무효처분을 취소하거나 소멸된 권리 등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령상 정해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더 이상 그 절차를 밟을 수 없어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의 상실로 이어져 그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기간 해태의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밟는 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등, 절차를 계속 밟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상당한 경우에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3. 관련 용어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3.1 「출원인 등」

「출원인 등」이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실용신 안등록출원인·상표출원인·디자인등록출원인과 그 등록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허권자·실용신안 권자·상표권자·디자인권자 등을 통칭한다. 그 밖에, 제3자 심사청구인·정보제공인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다가 무효처분되어 그 절차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3.2 「정당한 사유」

권리회복 신청에 있어「정당한 사유」란 절차를 밟는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해태된 경우를 말한다. 공동출원으로 출원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동권리자이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절차와 관계된 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당사자각각에 대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당사자 모두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어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을 하려는 출원인 등은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기간경과이유」와 「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를 기재한 「기간경과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경과이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간경과이유에 대한 기재는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충분하여야 한다.

(1) 기간경과이유로 기간 해태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①사건의 발생 및 소멸한 날짜, ②사건에 관계된 자 및 ③사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취한 조치를 ①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자 및 ②조치의 내용과 조치 시기 관점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건이 소멸한 날이란 사건을 인지하거나 해결됨으로써 기간 준수를 위한 행위가 가능해진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간관리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오류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할 날을 말하고, 담당자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면 대체자의 투입에 따라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된 날을 가리킨다. 사건이 소멸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사건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기재한다.

한편, 기간경과이유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이 발생해 기간이 해태되었음을 인지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준수하지 못했던 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①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자 및 ②조치의 내용과 조치 시기 관점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는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이유에서 벗어난 날을 말한다. 권리회복 규정은 권리회복 요건 외에 권리회복 기간을 두고 있는바, 상기 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는 권리회복 기간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란 해당 절차를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 위임의 문제로 출원절차가 취소되었다가 회복하는 것이라면 대리인 위임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어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날을 가리킨다.

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를 기재할 때는 그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기간경과이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는 기간 해태의 원인 사건이 특허청 입장에서 자명하게 알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증명 가능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원인 등이 입원으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해당 진단서 또는 입원사실증명서, 시스템의 불량으로 오작동이 있었다면 시스템 제작·판매 등을 한 회사에서 작성한 시스템동작 오류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될 수 있다.

제3자의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기간경과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계된 이메일, 업무 매뉴얼, 계약서 사본, 관계자의 진술서 등이 첨부서류로 포함될 수 있다.

5. 권리회복 심사

5.1 권리회복 심사 주체

(1) 권리회복에 대한 심사는 기간 해태로 절차 또는 권리가 소멸할 당시 당해 절차나 권리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한다.

예를 들어, 출원수수료 미납으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보정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아 출원절차가 무효처분된 경우, 무효된 출원에 대해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권리회복의 심사는 출원과에서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추납기간의 경과로 특허권이 소멸하였는데, 특허권자가 뒤늦게 특허료를 납부하면서 권리회복을 요청하였다면 당해 특허료 납부의허용 여부는 등록과에서 결정한다.

(2) 권리회복 심사 결론을 담당 부서 과(팀)장이 유보하였을 경우 고객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한 후 담당부서에서 특허청장 등의 명의로 통보한다.

5.2 권리회복 심사 객체

권리회복 심사는 ①권리회복 기간에 대한 심사와 ②권리회복 요건에 대한 심사로 구분된다. 권리회복 신청이 권리회복 기간 내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회복 요건도 만족하여야 권리회복이 인정된다.

권리회복 기간에 대한 심사와 권리회복 요건에 관한 심사는 선후 구분 없이 할 수 있으나, 권리회복 신청이 부적법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부적법한 사유를 기재해 반려처분한다.

권리회복 기간에 대한 심사는 권리회복이 권리회복 기간 내에 신청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권리회복이 가능한 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권리회복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허료 의 늦은 납부에 의한 권리회복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서, 추가납부기 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기간 을 경과해 제출한 권리회복 신청은 권리회복 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한다.

권리회복 요건의 심사는 기간 해태에 있어「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권리회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권리회복 기간 심사

권리회복 신청이 권리회복 기간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검토한다.

권리회복 기간은 각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출원인 등이 신청한 절차를 확인해 권리회복 기간을 계산한다.

법령	관련 조항		권리회복 기간
	제 16조	절차의 무효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
특 허	제67조의3	특허출원의 회복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
법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
Al	제3조	절차의 무효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
실 용 신 안	제 15조	특허출원의 회복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
년 법 -	제20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
상	제 18조	절차의 무효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
丑 법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
	제 18조	절차의 회복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
디자인 보호법	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

여기서, 「사유가 소멸한 날」 또는 「사유가 종료된 날」이란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이유에서 벗어난 날을 말한다. 즉, 해당 절차를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예를들어, 대리인 위임의 문제로 출원절차가 취소되었다가 회복하는 것이라면 대리인 위임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어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날을 가리킨다.

「사유가 소멸한 날」 또는 「사유가 종료된 날」은 출원인 등이 「기간경과이유서」에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서류 준비 등에 있어 과도하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사유가 소멸한 날」을 확정한다.

권리회복 신청이 권리회복 기간을 넘겨 제출된 경우에는 권리회복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반려처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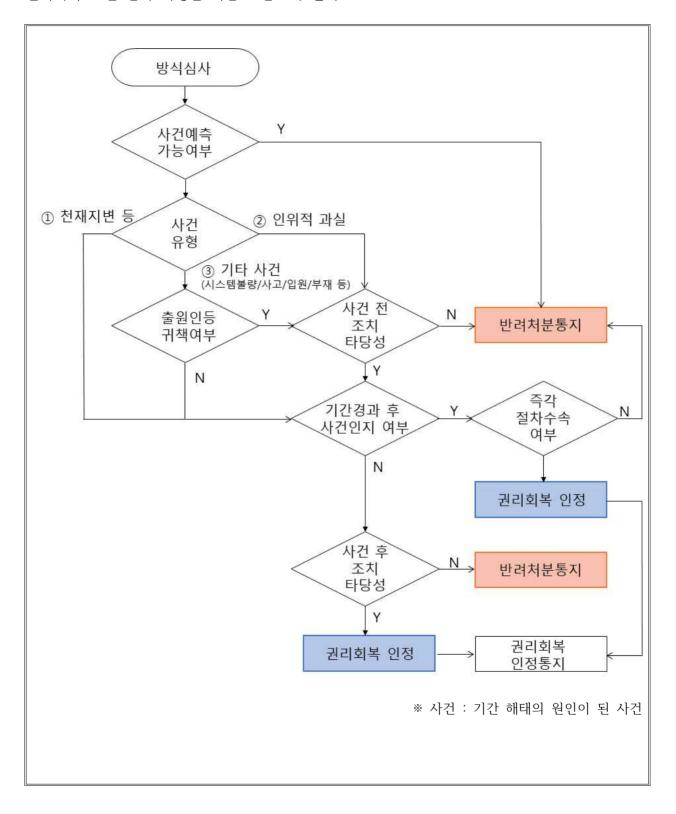
7. 권리회복 요건 심사

7.1. 권리회복 요건 심사 일반원칙

- (1) 자격을 취득해야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 성격상 변리사 단독의 실수 또는 태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2) 기간의 준수와 관련된 법령은 출원인 등이 당연히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 등의 법률의 오해, 부지의 주장, 법적 실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 (3) 대리인 및 보조인의 기간 해태가 특허청이 법적 의무 없이 출원인 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 또는 안내에만 의존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4) 산업재산권 법령의 지식이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위임한 결과로 기간이 해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5) 출원인 등이 기간 해태를 의도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출원인 등의 보조자, 대리인, 대리인의 보조자 등의 행위는 출원인 등에 영향을 미친다.
- (6)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권리회복 상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출원인 등과 대리인 간에 맺은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대리인과 출원절차에 대해서만 위임 계약을 맺은 경우, 연차등록료 추납기간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출원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대리인측이 부주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7.2. 권리회복 요건 심사 과정

권리회복 요건 심사 과정은 다음 흐름도와 같다.



7.2.1 방식심사

권리회복 여부는 출원인 등이 제출한 「기간경과이유서」와 첨부된 증명서류를 기초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원래 밟아야 할 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기간경과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기간경과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절차 관련 서류는 기간을 도과해 이유 없이 제출한 서류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특허 등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 등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로 보아 반려처분한다(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상표법시행규칙 제25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

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기간경과이유서」가 첨부되었다면 「기간경과이유서」에 기재된 "기간경과이유"나 "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가 명확하거나 상세하지 않더라도 권리회복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려하지 않고 권리회복을 심사한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가 부실하게 제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간경과이유서」는 첨부되었으나 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방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시해 보정을 명령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을 선임해 수수료 미납으로 무효처분된 출원절차의 취소를 청구하며 출원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당해 대리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수수료 납부에 관해 대리권의 하자를 치유하도록 보정명령한다.

7.2.2 사건의 예측 가능성

사건의 예측 가능성은 출원인 등이 「기간경과이유서」에서 이유로 든 사건을 중심으로 기간 해 태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발생 시기 및 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측 가 능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 기간 해태의 원인이 된 사건이 예측 가능한 경우, 출원인 등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치 여하에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조직의 폐지, 소유권의 이전 등은 통상 사전 계획에 따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회사 합병이 갑작스럽게 실패함에 따라 혼란 상황에서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대리인의 사임과 의도하지 않은 대리권의 변경은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출원인 등의 대리인 변경은 사전에 그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인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기간관리시스템(기간을 모니터링하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적 구조나 이들 간의 결합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설치 및 변경은 통상 사전 계획에 의하므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의 진단, 입원, 수술 등은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나, 일상적인 질병, 중하지 않은 치료 등은 예측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2) 기간 해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질 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바, 「기간경과이유서」를 바탕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출원인 등이 취한 조치 관점에서 기간을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7.2.3 사건의 유형 구분

기간 해태의 원인이 된 사건 유형에 따라 출원인 등이 일반적으로 취했어야 할 사전 조치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사전 조치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먼저,「천재지변 등」은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대규모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정전사고, 대규모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을 말한다.
- (2) 「인위적 과실」은 절차와 관계된 자에 의한 실수로 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절차와 관계된 자란 출원인 등뿐만 아니라, 출원인 등의 보조자, 대리인, 그 대리인의 보조자 등직간접적으로 기간 준수 과정에 관계되어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특허료 납부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대리인은 다시 특허사무소에 고용된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특허료 납부 기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허료를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절차와 관계된 자는 특허권자,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회계 담당직원이 된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회계 담당 직원이 기간 계산을 실수해 추납기간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인위적 과실」로 분류할 수 있다.

그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위적 과실로는 서류 분실, 기간관리시스템에의 데이터 입력 오류, 연락 과실 또는 사실오인 등이 있다.

(3)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건을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기간 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간관리를 담당한 관계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란의 상황에서 기간이 해태된 경우,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입원·수술·치료에 돌입한 경우, 기간관리 담당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 기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2.4 출원인 등의 귀책 여부

기간관리시스템의 오류나 담당자의 부재 등 「기타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에 있어,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 출원인 등의 책임은 없는지 판단한다. 출원인 등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리회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등 일반적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조치 사항이 타당했는지에 따라 권리회복이 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관리시스템의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시스템의 선정이나 도입 또는 설치·변경 작업에서의 기간 설정 등에 출원인 등이 무심했던 경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적으로 자동화된 컴퓨터에 의존하였을 뿐, 기간관리시스템의 타당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등 관리(백업용 복사본 생성이나 데이터 유지를 위한 유사한 작업 등 기본적으로 행하는 예방조치를 포함한다)하지 않았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7.2.5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

기간 해태의 사건 유형이 「인위적 과실」이었던 경우와 「기타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로서 출원 인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건 전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 발생 후의 조치까지도 타당한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해 권리회복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 전 조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반려처분한다.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은 조치를 취할 자의 지위와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 자가 처한 상황에서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자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 (1) 이미 기간이 해태되어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 (2) 인위적 실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될 경우에는 사건 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취급한다.
- (3) 출원인 등은 대리인에게 의존할 권리가 있고, 대리인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게 절차를 위임하고 부지의 상태인 경우에도 출원인 등의 사건 전 조치는 타당했던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출원인 등이 기간 도과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 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취급한다.

대부분의 기간 해태는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게 출원 등의 관리를 위임한 상황에서 상호 간의 통신 오류, 기간관리시스템의 오작동, 관계자의 사실오인 등에서 비롯되는바, 다음과 같이 사례별 로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기간관리시스템 관련

기간의 해태가 기간관리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 사건 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대기업(비교적 큰 규모의 특허사무소 등, 이하 같다)과 소기업(변리사 단독의 특허사무소 등, 이하 같다) 간에는 기간관리시스템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다.

특허부서가 별도로 있거나 적어도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기한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대기업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구분은 관리해야 할 기간의 수에 관계될 수도 있다. 기간관리 건수가 많은 경우 당연히 기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소수의 직원만 두고 변리사가 단독으로, 적은 수의 산업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면 소기업으로 보고 기간관리시스템에 대한 요건은 면제할 수 있다.

대기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간 다중점검(크로스체크, cross check) 구조를 갖추어야 기간 관리시스템이 부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간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담당 직원 외에 해당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인력을 보유하거나,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야 크로스체크 구조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간 모니터링의 임무가 직원 단독에게만 맡겨진 경우, 크로스체크 구조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기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크로스체크 구조는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을 반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수년간 효과적으로 오류 없이 작동한 기간관리시스템은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

□ 우편물 수발송 관련

회사나 특허사무소 내의 우편물 수발송 시스템은 통상 매우 낮은 수준의 작업만으로 이루어지 므로 일상적으로 만족스럽게 작동하고 있었다면 사건 전 조치는 충분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간관리시스템과는 달리 우편물 수발송 시스템의 경우, 크로스체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편·택배시 스템을 이용해 발송하였다면 사건 전 조치는 타당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출원인 등과 대리인 간의 의견 교환 관련

대리인이 출원인 등의 의도를 오인해 절차를 밟지 않아 기간이 도과한 경우, 출원인 등과 대리인 간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사건 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취급한다.

대리인은 절차와 관련해 출원인 등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중요한 절차의 경우, 적어도 1회 이상 출원인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어야만 사건 전 조치가 타당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보조자의 활용 관련

보조자의 실수로 기간이 해태된 경우, ①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교육된 적합한 자를 선택했고, ②수행할 업무에 대해 교육하고 명확하게 지시하였으며, ③위임한 업무에 관해 합리적 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당해 보조자와 관련한 사건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취급한다.

보조자의 부재를 대비해 대체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이 적용된다.

출원인 등은 보조자가 사건에 관여된 경우, 「기간경과이유서」에서 적어도 위의 3가지 요건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출원인 등이나 대리인이 단순 업무가 아닌 것을 보조자에게 위임하여 기간이 해태된 경우 사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취급한다.

특허사무소의 직원이 기술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자에게도 대리인 수준의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7.2.6 사건 후 조치의 타당성

사건으로 인해 기간이 해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즉, 사건에 의해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및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특 허청에 제출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즉각적이었는지를 심사한다.

만약,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기간이 도과한 후라면 지체 없이 즉각 절차를 밟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의도적인 지연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준비를 마쳐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사건 후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회복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 등에게 통지한다.

사건 전 조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반려처분한다.

7.2.7 기타 심사 고려사항

(1) 출원인 등이 법인인 경우, 사건 전후의 조치에 대한 타당성 판단에 있어 해당 절차의 담당자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서 취한 조치도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특허부서가 갖추어진 법인이라면 해당 출원 건을 담당하는 직원 외에 특허부서 전체가 일반적으로 취했어야 할 조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허부서가 없다면 담당 직원 외에 해당 절차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의조치도 고려한다.

- (2) 절차를 밟는 자가 복수로서 대표자를 선임했거나, 대표자를 선임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자와 같이 행동하는 관계가 성립한 경우, 대표자가 취한 조치의 타당성은 그 외의 자가 취한 조치와 구분해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외의 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관계가 없으나 알고 있었다면 대신해 절차를 밟을 것이 요구된다.
- (3) 대리인이 특허업무법인인 경우, 타당한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변리사뿐만 아니라 특허업무법인으로서 취한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8. 권리회복 심사 사례

8.1 천재지변 등

(1) 자연재해로 인한 연락 두절		
사례	 갑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지 대리인, 을과 국내 특허관리인, 병을 선임해 특허출원을 관리하고 있음 심사청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출원인의 심사청구 지시를 받은 현지 대리인인, 을이 병에게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현지가 폭풍우 등으로 전력, 전화선이 단선되고 통신이 불능인 상태가 된바, 휴대전화로 간신히 전자메일을 송신하였지만 기한 만료 당일이어서 특허관리인, 병은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었음 기한 만료 후 4일이 지나서야 현지 대리인, 을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랩탑으로 전자메일을 다시 보낸바 비로소 특허관리인, 병이 기간 해태 사실을 인지하였음 병은 을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당일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기간경과이유서와 함께 제출함 병은 기간경과이유서에 현지 언론의 천재지변 기사, 현지 대리인 사무소 피해사진, 현지 전력회사의 정전기록 보고서, 현지 통신회사의 인터넷 단선 확인 메일, 을이 병에게 송신한 전자메일 스크린샷 2건을 첨부함 	
권리 회복 심사	 기간 해태와 관련된 사건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음 갑은 을과 병에게 특허출원 관리를 위임한바, 사건에 관계된 자는 특허권자 갑과 현지 대리인, 을 및 국내 특허관리인 병임 갑은 대리인인 을 및 병에게 사건을 위임한 이상 의존할 권리가 있고 부지의 상태였으므로 갑의 사건 전 조치는 타당함 사례의 사건 유형은 「천재지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지 대리인, 을은 사건 인지를 기간 경과 전에 하였으므로 사건 후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을은 천재지변 하에서도 갑의 지시를 받아 최대한 병과 연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결국 전력 및 인터넷 사정이 양호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까지 연락하려고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되므로 사건 후 조치가 타당했다고 볼 수 있음 병은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사건을 인지한바, 사건 후 조치는 검토할 필요가 없고 즉각적으로 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병이 을로부터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심사청구서를 당일에 제출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바, 권리회복 가능 	
심사 결과	권리회복 인정	

8.2 인위적 과실

(1) 대리인의 실수에 의한 특허료 불납		
사례	 특허권자인 갑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회사로, 독일에 위치한 을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대리인 병에게 소유권의 이전과 특허권 관리를 위임하였음 그런데 병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특허권 이전은 물론, 4년차 연차등록료 납부를 추납기간까지도 하지 않았음 병의 담당 직원은 오랫동안 근무한 숙련된 직원이었으나 당해 권리 이전이나 특허료 납부에 관해 병이 확인한 바는 없음 갑은 뒤늦게 위 사실을 인지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서 대리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고, 불납의 의도가 없으므로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권리 회복 심사	 기간 해태와 관련된 사건은 "대리인 사무소 직원의 실수에 의한 특허료 불납"이라고 할 수 있음 사례에서 갑은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 대리인은 직원을 보조자로 활용하고 있는바, 사건에 관계된 자는 갑, 대리인, 대리인 사무소의 담당 직원임 실수는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사건의 예측 가능성은 없음 사건 유형은 「인위적 과실」로 구분할 수 있는바,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함 갑은 대리인인 병에게 사건을 위임한 이상 의존할 권리가 있고 부지의 상태였으므로 사건 전 조치는 타당함. 즉, 독자적으로 권리의 이전 여부나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조치가 타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병은 대리인으로서 보조자를 활용하면서 전적으로 보조자에게 맡겼을 뿐 정기적으로 권리이전 여부나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리인 병의 사건 전 조치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반려이유통지서를 발송하고 반려처분함 	
심사 결과	권리회복 불인정 - 반려처분	

(2) 특허청이 발송하는 "소멸예고안내장"을 받지 못해 특허료 불납 - 갑은 외국에 거주하는 특허권자로. 대리인 을을 특허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 권을 관리하고 있음 - 한편, 특허청은 특허료 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멸예고안내장"를 우편 발송하고 있음 - 대리인 을은 외국으로부터의 인커밍(incoming) 사건을 상당한 비중으로 수임하 사례 면서도 기간관리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특허청으로부터 소멸예고통지 서가 접수되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 - 특허청의 우편 발송 오류로 갑의 특허권에 대해 4년차의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및 추납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소멸예고안내장은 발송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을은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음 (1) 심사방식 1 - 기간의 해태가 특허청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또는 안내에만 의존함으로써 발생한바, 더 나아가 판단하기 이전에 권리회복은 인정될 수 없음 * 7.1 권리회복 요건 심사 일반원칙에 어긋날 경우 다른 요건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즉각 반려 (2) 심사방식 2 - 기간 해태와 관련된 사건은 "대리인 을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납 부기간을 놓인 것"임 -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특허권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였으므로 사건에 관계된 자는 권리 특허권자 갑 및 대리인 을임 회복 - 의도적으로 연차등록료를 미납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의 예측 가능성은 없음 심사 - 사건 유형은 「인위적 과실」로 분류할 수 있는바. 사건 전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야 함 - 갑은 대리인인 을에게 사건을 위임한 이상 의존할 권리가 있고 부지의 상태였으 므로 갑의 사건 전 조치는 타당함 - 을은 외국 건을 상당한 비중으로 수임하는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기간관리시스 템을 두지 않았으며. 특허청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뿐 기간 경과를 대비하는 크로스체크 과정도 구비하지 않는 등 사건 전 조치가 타당하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권리회복은 인정될 수 없음 심사 권리회복 불인정 - 반려처분 결과

8.3 기타 사건

(1) 특허청의 갑작스러운 통지서 양식 변경에 따른 기간관리시스템의 오류		
사례	 갑은 특허권자로 대리인 을에게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함 을은 중견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 기간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은 특허청에서 XML형식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에서 기한 정보를 추출해 기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도입 후 7년 가까이 오류를 일으킨 경우는 없었음 그러던 중, 특허청에서 통지서 양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변경하면서 기간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간 정보가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연차등록료 추납기간을 놓침 을은 시스템 판매 회사가 발행한 시스템 결함 인증서, 당해 특허권에 대한 결함 발생 시 출원정보 로그 파일, 정상 작동 시 작업 로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권리 회복 심사	 기간 해태와 관련된 사건은 "기간관리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볼 수 있음 갑은 을에게 특허권 관리를 위임한바, 사건에 관계된 자는 특허권자 갑과 대리인 을임 갑은 대리인인 을에게 사건을 위임한 이상 의존할 권리가 있고 부지의 상태였으므로 갑의 사건 전 조치는 타당함 문제없이 운영되던 기간관리시스템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오작동할 것은 예측할수 없고 특허청의 통지서 양식 변경도 예고가 없었던바, 사건의 예측 가능성은 없음 사건 유형은 「기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용 과정에 대리인의 귀책 사유는 없음 기간 도과를 인지한 후 지체없이 연차등록료를 권리회복 기간 내 납부하였다면 권리회복은 인정되어야 함 	
심사 결과	권리회복 인정	

(2) 간헐적인 의식장애로 인한 실용신안등록료 불납		
사례	 갑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 출원인으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 안등록을 받은 실용신안권자임 4년차분 등록료의 납부기일은 2003년 12월 6일이었으며, 추납기간은 그로부터 6 개월 후인 2004년 6월 6일이었으나 추납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6월 4일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실신해 내과의원에 입원하였음 검사 결과 철결핍성 빈혈이었으며 일과성 대뇌 허혈증 발작의증과 겹쳐 6월 11일까지 수면유도를 이용한 안정 치료를 받음 	
권리 회복 심사	 기간 해태와 관련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병"이라고 할 수 있음 사례에서 갑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실용신안권을 관리하고 있는바, 사건에 관계된 자는 갑 단독임 갑이 추납기간의 만료일인 2004년 6월 6일 이전에 스스로 빈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의 예측 가능성은 없음 사건 유형은 「기타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발병 과정에 갑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귀책사유는 없음 등록료 불납 사실을 퇴원한 후에 알았을 것인바, 권리회복 기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의도적인 지연 없이 권리회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늦은 등록료 납부를 받아주어야 함 	
심사 결과	권리회복 인정	